

6.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3-106號 1993. 6. 22

1. 개정이유

공사감리와 품질관리의 제도개선 및 건설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이 1993년 6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교육훈련 대상자중 협업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훈련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나. 건설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체계를 확립하고자 건설기술연구·개발 실시대상기관을 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며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전

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협약, 체결,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연구성과의 이용·관리등 건설기술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건설기술연구기관 협의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건설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건설기술개발투자권고액을 현행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1백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음.

라. 신기술지정 절차에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제를 도입하였고 신기술사용료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보호기간도 현행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연장하였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대상 건설공사에 전기설비에 포함된 건설공사도 포함시켜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설계심의대상공사 및

- 심의횟수를 조정하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수를 150인이내에서 300인이내로 확대하였음.
- 바. 시공평가대상건설공사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음.
- 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건축공사는 661m^2 이상,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는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자체 안전점검과 전문기관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매일, 후자는 년 1회이상 실시토록하는등 안전점검의 방법, 절차등을 명시하였음.
- 아. 건설자재 생산자에 대하여도 품질시험을 의무화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할 자재의 범위를 레미콘, 아스콘, 바다모래등으로 정하였음.
- 자. 건설공사의 감리제가 책임감리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리대상기관에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을 추가하고 감리대상공사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외국감리 전문회사의 활용절차를 명시하였음.
- 차.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및 현장배치기준을 정하였음.
- 카. 감리전문회사를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업회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등록기준을 정하였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 기술진흥담당관, 전화 : 503-73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